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26
------	------

2014. 2. 25.  
재정경제위원회

##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2월 17일, 김명신의원

나. 회부일자 : 2014년 2월 1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14.2.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 II . 제안설명의 요지(김명신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교육·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정책에 따라 서울 교육·복지 민관협의회와 그 효율적인 논의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교육·복지 민관협력 사업은 공익성을 근간으로 집행부의 행정력과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의 정책 능력 등과 지역 풀뿌리의 자발성이 조화를 이루어 추진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실행체제의 미비로 민간 협력활동의 결과가 단순 연구와 협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서울 교육·복지 민관협회의 체계적인 실행체제를 구축하고자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종합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을 명시함(안 제9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설).
-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 가. 조례안의 개요

- 개정안은 교육지원과 협력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역사회,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지는 민관 협의기구인 ‘교육·복지 민관협의회’의 실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나.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안 제9조의2 신설)

- 서울 교육·복지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학생과 아동·청소년의 건전하고 건강한 발달을 위한 교육·복지관련 주요 민관협력사항의 협의를 위해 2012년 5월 조례 제정과 함께 구성되었음.
- 협의회는 시장, 교육감, 시의회의장, 구청장협의회 회장,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5명의 당연직 위원과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11명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음(참고자료 1).
- 한편,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복지 추진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과 협의·조정을 위한 실무 기구로 정책협의회를 별도로 두고 있음.
- 개정안은 협의회에서 논의한 다양한 교육·복지 민관협력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실행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순 협의와 연구에 그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9조의2 제1항 신설).
- 신설되는 센터는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의 조사와 사업분석·평가·연구, 네

트위크 구축,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 및 방과후 활동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의 홍보·전파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임(안 제9조의2 제2항 신설).

-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교육, 아동, 청소년 문제를 민관 거버넌스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회가 사회적 과제에 대한 실행수단 없이 문제 제기에 머무는 것은 협의회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협의결과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할 필요성은 있음.
- 다만, 협의회 출범부터 우려되었던 정치적 상황변화와 참여 주체간의 갈등 표출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해 협의회 기능과 활동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기능이 위축되고 존립위기에 처할 수 있음.
- 또한 시장, 교육감, 구청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인 협의회에서의 사전 협의 없이 공동의장 중 1명인 시장 소속 하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협의회 구성·운영 원리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조례로 센터 설립을 규율하기에 앞서 협의회 구성원 간에 센터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센터의 구성과 업무수행에는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산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필요함.
- 한편, 협의회는 교육지원과 협력을 위한 민관협의기구로서 조례에서도 협의회와 정책협의회의 기능을 참여기관 간 협의·조정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표 참조).

- 그러나 협의체 실무를 위탁받는 센터가 교육청과 자치구이 처리해야 할 업무인 어린이 청소년 방과후 활동종합계획의 수립·시행(제4호),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제5호)까지도 규정하는 등 관계 법령을 저촉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표〉 협의회, 정책협의회, 센터의 기능 비교

협의회(제3조)	정책협의회(제8조②)	센터(안 제9조의2 ②)
1. 학생 및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교육·복지 관련 주요한 민관협력사항의 협의 2. 제8조제2항에 따른 정책협의회 협의사항의 추진 3. 정책협의회 안건의 조정	1. 교육지원 및 협력을 위한 시, 교육청, 자치구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협의 2. 교육관련 행정기관 간의 협의·조정 3. 지역 및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관한 사항 협의 4. 학교와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원사항 협의 5. 그 밖에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사항 협의·조정 등	1.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 연구 3.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4. 어린이 청소년 방과후 활동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6.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 관련 교육·홍보·전파 7. 그 밖에 교육지원 및 협력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설립에 앞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의 구성원인 교육청 및 자치구와의 긴밀한 논의 및 협의를 필요함.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복지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
3.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4. 어린이 청소년 방과후 활동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6.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 관련 교육·홍보·전파
7. 그 밖에 교육지원 및 협력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9조의2(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p> <p>②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2.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li> <li>3. 교육지원 및 협력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li> <li>4. 어린이 청소년 방과후 활동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5.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li> <li>6. 교육지원 및 협력 사업 관련 교육·홍보·전파</li> <li>7. 그 밖에 교육지원 및 협력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③ 시장은 교육·복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